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5. 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5. 25.

다. 상정일자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6. 15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박상수】

가. 제안이유

규격화된 표창 서식을 대상 및 행사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조항 개정(안 제10조제1항)

- 〔별지 제6호서식〕 삭제

○ 표창사실 확인 조항 개정(안 제18조제1～3항)

-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신청 자격·방법 및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

- 〔별지 제7～8호서식〕 신설

다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: 2023. 4. 27. ~ 5. 1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규격화된 표창 서식을 대상 및 행사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(안 제10조제1항)에 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조항 개정하는 내용으로 '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.'로 개정하고 〔별지 제6호 서식〕을 삭제하고, (안 제18조제1~3항)에 표창사실 확인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신청 자격·방법 및 발급에 관한 사항 〔별지 제7~8호 서식〕을 신설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규격화된 표창 서식을 대상 및 행사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표창장이란 어는 특정분야에 대해서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만큼 존경의 의미를 부여하고 표창장 디자인을 선정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